

1. 개정이유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및 현물이전 서비스 등 추진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 위임하고 있는 고유식별정보 처리 관련 사항을 규정하면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본인이 제시하는 모든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 금리 공시하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한 금리 공시 강화(안 제23조제1항제7호)

퇴직연금사업자가 본인이 제시하는 모든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 금리 공시하는 것을 명확히 함

나. 고유식별정보 처리 관련 위임사항 규정(안 제24조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기관으로 한국예탁결제원, 금융결제원, 상품제공기관을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 중 “상품제공기관의 업무를 겸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 퇴직연금제도별료”를 “퇴직연금제도별료”로 하고, “제공(다른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산관리기관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을 “제시하고”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영 제43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시행령 제43조제9호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변경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업무에 관한 정보의 조회를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산관리시스템을 지원하는 경우와 제8조의2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령 제43조제12호에 따른 운용관리업무를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투자한도를 조회·통보하는 등의 전산관리시스템을 지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시행령 제43조제11호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업무에 관한 정보의

- 조회를 위해 가입자에게 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상품제공기관(제8조의2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1호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 지원하는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투자 금액을 통보하는 경우에 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경우 202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퇴직연금사업자의 공시)</p> <p>① 퇴직연금사업자는 법 제33조 제8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한다.</p> <p>1. ~ 6. (생략)</p> <p>7. <u>상품제공기관의 업무를 겸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 퇴직연금제도별로 자신이 제공(다른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산관리기관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별 금리</u></p> <p>②·③ (생략)</p> <p><u><신 설></u></p>	<p>제23조(퇴직연금사업자의 공시)</p> <p>① -----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퇴직연금제도별로 -----</u> ----- <u>제시</u> <u>하고 -----</u>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u>제2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u> <u>시행령 제43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u></p> <p>1. 「<u>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u>」 제294조에 따른 <u>한국예탁결제원(시행령 제43조제9호에 따른 퇴직연금사업</u></p>

자 변경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업무에 관한 정보의 조회를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산관리시스템을 지원하는 경우와 제8조의2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령 제43조제12호에 따른 운용관리업무를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투자한도를 조회·통보하는 등의 전산관리시스템을 지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시행령 제43조 제11호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업무에 관한 정보의 조회를 위해 가입자에게 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상품제공기관(제8조의2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1호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 지원하는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투자 금액을 통보하는 경우에 한한다.)